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9.

발 의 자 : 이학영 · 김주영 · 이해민  
강준현 · 박희승 · 전용기  
백선희 · 박 정 · 염태영  
박정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유입으로 인한 악취, 대기오염,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폐기물의 반출·반입 실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계량값,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,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밖 주민들의 불안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제3항·제4항 신설 및 안 제45조).



##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의 제목 중 “처리”를 “처리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계량값,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, 영상정보 등(이하 “생활폐기물반출정보등”이라 한다)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반출정보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.

제45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생활폐기물반출정보등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을 반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내용과 기록(이하 “전산기록”이라 한다)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(이하 “전산처리기구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 1. (생략)
- 2. ~ 3. (생략)
- ② ~ ⑤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생활폐기물반출정보등

- 1의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- 2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